

#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46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8. 9.

발의자 : 황주홍 · 이찬열 · 김관영

송기석 · 김종희 · 김삼화

박준영 · 이태규 · 최경환

강창일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,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되어 있어 임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.

이에 임업의 산업화 추진, 임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임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 및 제29조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45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

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 
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원예시설”을 “임야·원예시설”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소속 기관의 장”을 “산림청장, 소속 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) ①</p> <p>농어업·농어촌에 관련된 용자·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“농어업경영정보”라 한다)을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 <p>1. 농업경영체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0조에 따른 농지·축사·<u>원예시설</u> 등 생산수단, 생산농산물,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</p> <p>2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4조(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9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</p> <p>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<u>소속 기</u></p>	<p>제29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<p><u>관의 장</u>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<u>장, 소속 기관의 장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